



시보는 컴퓨터로써의 효력을 갖는다

선	기관의 장
람	

제43호 2022. 11. 9.(수)

고시

- 광양시 고시 제2022-34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
- 광양시 고시 제2022-34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2
- 광양시 고시 제2022-344호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개별 고시 3
- 광양시 고시 제2022-346호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개별 고시 5
- 광양시 고시 제2022-347호 광양시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폐지 고시 7
- 광양시 고시 제2022-35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9

공고

- 광양시 공고 제2022-2083호 「광양시 재향영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」 입법예고 10
- 광양시 공고 제2022-2084호 「광양시 자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」 입법예고 15
- 광양시 공고 제2022-2099호 광양 상황·도아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 예정지(변경) 지정 공고 20

회																			
람																			

▶ 발행 : 광양시 ▶ 편집 : 홍보소통실 (☎ 797-2323, 행정2713)

하천점용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1월 9일

광 양 시 장

가. 허가내용

하천의 명칭		금천천
점용자	주소	광양시 행정2길 5, 4층(중동)
	성명	관광과
점용지역	위치	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2815
	면적	108㎡
점용목적		공작물 설치
점용내용		교량 설치
점용기간		2022. 11. 3. ~ 영 구

나. 관계도서는 광양시청(안전총괄과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(☎061-797-273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광양시 고시 제2022-343호

하천점용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1월 9일

광 양 시 장

가. 허가내용

하천의 명칭		광양동천
점용자	주소	광양시 행정2길 5, 4층(중동)
	성명	관광과
점용지역	위치	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221외 42필지
	면적	상류: 1,900㎡ 하류: 28,375㎡
점용목적		공작물 설치
점용내용		백운산권역 4대계곡 관광명소화사업
점용기간		당초: 2017. 12. ~ 2022. 12. 변경: 2017. 12 ~ 영 구

나. 관계도서는 광양시청(안전총괄과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(☎061-797-273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개별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. 11. 7.

광 양 시 장

○ 도로명주소

구 분	고 시 대 상	고시조서	비 고
도로명주소 (건물번호) 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평5길 6-21	별지참조	
	아 래 빈 칸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(☎797-3389, 2373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2. 11. 7.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고시 대상

연번	업무구분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 사유
계	건물번호 부여 1건					
1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794-5	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평5길 6-21	20221107	20081001	옛 관아 서쪽 들에서 인용, 일련번호식 부여

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개별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. 11. 9.

광 양 시 장

○ 도로명주소

구 분	고 시 대 상	고시조서	비 고
도로명주소 (건물번호) 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중앙로 115-10 (중동) 외 10건	별지참조	
	아 래 빈 칸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(☎797-3389, 2373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2. 11. 9.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고시 대상

연번	업무구분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 사유
계	건물번호 부여 11건					
1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14-3	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중앙로 115-10 (중동)	20221109	20220126	중마동 중앙에 위치한 도로에서 인용
2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763-2, 763-3, 763-4, 763-5, 763-7, 763-8, 763-9	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초남2공단1길 77-8	20221109	20221102	광양초남제2공단에서 인용, 일련번호식 부여
3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산40-8	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옥진로 756	20221109	20081001	옥곡과 진상에서 명명
4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512	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조양길 95	20221109	20081001	옛 지명에서 인용
5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249	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율촌산단7로 71	20221109	20190307	율촌산업단지 명칭을 인용 도로명 부여
6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229	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율촌산단8로 56	20221109	20190307	율촌산업단지 명칭 인용 도로명 부여
7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익신리 741-7	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익신산단1길 65	20221109	20160127	광양익신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인용
8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228	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강정길 51	20221109	20221102	행정리명에서 인용
9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689-12	전라남도 광양시 광포로 12 (광영동)	20221109	20081001	옛 지명에서 인용
10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717-2	전라남도 광양시 새미골1길 10 (광영동)	20221109	20081001	옛 지명에서 인용, 일련번호식 부여
11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587-6	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산단5길 83-11	20221109	20120502	신금일반산업단지에서 인용, 일련번호식 부여

광양시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폐지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 합니다.

〈폐지 내역〉

연번	폐지 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도로명 폐지 사유
1	전남 광양시 태인길 182-5 외 1	2022. 11. 9.	건축물대장 말소 (※상세내역 불임참조)
2	이 하 빈 칸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(☎ 797-2388, 3389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2022. 11. 9.

광 양 시 장

도로명주소 폐지 대상

연번	업무구분	도로명주소	건축물대장 말소일 (건축물멸실 확인일)	폐지 고시일	폐지 사유
1	건물번호 폐지	광양시 태인길 182-5	2022. 11. 1.	2022. 11. 9.	건축물대장 말소
2	건물번호 폐지	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1497	2022. 11. 4.		

하천점용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1월 9일

광 양 시 장

가. 허가내용

하천의 명칭		광양서천
점용자	주소	광양시 광양읍 칠성로 60-1, 3층
	성명	광양시소상공인연합회
점용지역	위치	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633 외 3필지
	면적	990㎡
점용목적		토지의 점용
점용내용		기존: 소상공인의 날 희망 페스타 및 푸드트럭 설치 변경: 광양시소상공인연합회 행사 “제3회 소상공인의 날 희망 페스타 계절음식점 및 푸드트럭 설치”
점용기간		2022. 11. 12. ~ 2022. 11. 12.

나. 관계도서는 광양시청(안전총괄과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(☎061-797-273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광양시 공고 제2022-2083호

「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정 조례(안) 입법예고

「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제정함에 있어 「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입법취지 및 주요 개정 사항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. 11. 2.

광 양 시 장

1. 제정이유

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 개정에 따라 광양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의 사회질서 의식 고취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지원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사업 규정 (안 제3조)
- 다.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(안 제4조)
- 라.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 및 반환 (안 제5조, 제6조)

3. 입법예고 : 2022. 11. 2. ~ 11. 22.(20일간)

4. 의견 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2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본 제정안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광양시 총무과(061-797-2719)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가. 제출서식 : 붙임 참고

나. 제출방법 : 일반우편, 전자우편 또는 팩스

다. 제출하실 곳

- 일반우편 : 광양시 시청로 33(중동), 광양시청 총무과
- 전자우편 : kds2059@korea.kr
- 팩스 : 061-797-2579

붙임 1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2. 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(안) 1부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안) 내용	찬성여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

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광양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광양시 재향경우회(이하 “경우회”라 한다)라 함은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 제5조에 따라 조직된 광양시 관내 소재의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사업 등) 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
2.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
3.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
4.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)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「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 규정에 의하여 실적과 정산서를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시장은 경우회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5조(중복지원 금지)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.

제6조(보조금의 반환)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.

제7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「광양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정 조례(안) 입법예고

「광양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제정함에 있어 「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입법취지 및 주요 개정사항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. 11. 2.

광 양 시 장

1. 제정이유

「지방행정동우회법」 제정(‘20.3.31.시행)에 따라 행정 경험이 풍부한 광양시 행정동우회의 지원을 위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에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)
- 나. 지원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사업 규정 (안 제2조)
- 다.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(안 제3조)
- 라.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 및 반환 (안 제4조, 제5조)

3. 입법예고 : 2022. 11. 2. ~ 11. 22.(20일간)

4. 의견 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2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본 제정안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광양시 총무과(061-797-2719)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가. 제출서식 : 붙임 참고

나. 제출방법 : 일반우편, 전자우편 또는 팩스

다. 제출하실 곳

- 일반우편 : 광양시 시청로 33(중동), 광양시청 총무과
- 전자우편 : kds2059@korea.kr
- 팩스 : 061-797-2579

붙임 1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2. 광양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(안) 1부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광양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안) 내용	찬성여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

광양시 조례 제 호

광양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행정동우회법」에 따라 설립된 광양시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사업) 광양시장(이하 “시장”라 한다)은 광양시 행정동우회(이하 “동우회”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2.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

제3조(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) ① 행정동우회가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중복지원 금지)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.

제5조(보조금의 반환) 시장은 동우회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.

제6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광양시 공고 제2022 - 2099호

광양 성황·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 예정지(변경) 지정 공고

광양시 공고 제2018-964호(2022.05.09.)로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된 광양 성황·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환지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지 예정지(변경) 지정 공고합니다.

2022. 11. 09.



1. 사업의 개요

- 가. 사업명 : 광양 성황·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
- 나. 위치 : 광양시 성황동 일원(성황동·도이동→성황동, 행정구역조정)
- 다. 면적 : 654,760.3㎡(654,753㎡→654,760.3㎡, 증 7.3㎡)
- 라. 사업기간 : 2009. 11. 20. ~ 2022. 12. 31.
- 마. 시행자 : 광양시장
- 바. 시행방식 : 평가식 환지방식

2. 환지 예정지(변경) 지정 내역

- 가. 변경 사유 :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
 - ※ 광양 성황·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·개발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[전라남도 고시 제486호(2022.11.03.)]에 따름.

- 나. 변경 내역 : 게재 생략

3. 환지 예정지(변경) 지정 유의사항

- 가. 환지예정지(변경) 지정의 효력 발생일은 2022. 11. 10.부터입니다.

- 나. 「도시개발법」 제37조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·수익은 2018. 5. 9. 정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 - 다. 「도시개발법」 제36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.
 - 라. 환지 면적 증감 부분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청산(징수 및 교부)하게 됩니다.
 - 마. 지적측량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환지계획(변경) 사항으로 「도시개발법」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관계 서류의 공람은 생략합니다.
4. 기타 관계 서류 등은 광양시 택지과(☎ 061-797-2848)에 비치하고 있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, 별도의 개별통지는 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. 끝.